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정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891

발의연월일: 2024. 7. 17.

발 의 자:이정헌・박민규・이훈기

이성윤 • 박수현 • 이수진

정진욱 • 박범계 • 강유정

황정아 · 서영교 · 김기표

김문수・김 현・오세희

전현희·채현일·박희승

김영환 · 남인순 · 문금주

이광희 · 최민희 · 박선원

안태준 의원(2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3년 기준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5년 전인 0.91명에서 큰 폭으로 하락한 2023년 기준 0.72명으로, 저출생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. 이와 같은 심각한 저출생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후조리 비용 부담 완화 등 다방면의 지원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.

현행법은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데, 공공산후조리원은 민간산후조리원에 비하여 그 비용이 저렴하고, 지방자치단체 장 등이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 이용이나 요금 감면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설치·운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.

그러나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산후조리원 현황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 기준으로 전국 공공산후조리원 수는 총 20곳으로 민간산후조리원 수 436곳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남.

이에 민간 산후조리원이 부족한 지역, 인구가 40만명 미만인 지역, 최근 5년 간 합계출산율이 0.5명 미만인 지역의 경우 반드시 공공산후 조리원을 설치·운영하도록 하고, 국가가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 중 그 설치 필요성 이 큰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·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(안 제15조의17 등). 법률 제 호
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17제1항 중 "시·도지사"를 "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"로, "관할 구역"을 "지역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- 1. 신생아 수 대비 민간산후조리원 수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
- 2. 인구가 40만명 미만인 지역
- 3. 최근 5년 평균 합계출산율(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말한다)이 0.5명 미만인 지역 제21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10. 제15조의17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・운영 경비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15조의17(지방자치단체의 산후 제15조의17(지방자치단체의 산후 조리원 설치) ① 시·도지사 조리원 설치) ① 보건복지부장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관 관, 시·도지사-----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 -----지역-----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 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 조리원(이하 이 조에서 "공공 산후조리원"이라 한다)을 설치 •운영할 수 있다. <단서 신 -----. 다만, 설>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・운 영하여야 한다. <u><신</u>설> 1. 신생아 수 대비 민간산후조 리원 수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 2. 인구가 40만명 미만인 지역 <신 설> <신 설> 3. 최근 5년 평균 합계출산율 (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에 낳 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 녀 수를 말한다)이 0.5명 미 만인 지역

② (생 략)

제21조(경비의 보조)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1. ~ 9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② (생 략)

- ② (현행과 같음)
- 제21조(경비의 보조) ① 국가는 제21조(경비의 보조) ① ------

----.

- 1. ~ 9. (현행과 같음)
- 10. 제15조의17제1항 단서에 따 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· 운영 경비
- ② (현행과 같음)